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제2026-23호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직 근로자 채용(정정)공고

2026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공고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채용 안내 문구 중 연령 표기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

1. 채용개요 * 직종별 중복 응시 불가 (중복 응시 시 부적격 처리)

모집구분	인원	업무내용	근로형태	비고
환경미화원 A	1명	▸ **실내외 청소 및 청결상태 유지 등 미화활동** * 바닥·화장실·사워실 등 청소, 소모품관리, 배수로 점검 포함 등 환경정비 전반 ▸ **폐기물 처리 및 운반(수동트럭 운행)** ▸ **수목 및 조경관리, 제초·제설 등** ▸ **기타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주40시간 (상시)	**(준)고령자 우선채용** * 근무시간(예시) : 08:00~17:00
환경미화원 B	2명	▸ **실내외 청소 및 청결상태 유지 등 미화활동** * 바닥·화장실·사워실·생활관 호실 등 청소, 소모품 관리, 폐기물 처리, 배수로 점검 등 환경정비 전반 ▸ **기타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주40시간 (상시)	**(준)고령자 우선채용** * 근무시간(예시) : 06:30~15:30
(마감) ~~야간전담 사감~~	~~1명~~	~~▸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등 사감업무~~ ~~▸ 기타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주40시간 (상시)~~	**접수 마감**

* 학교 여건에 따라 근무일·근무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외에 학교장이 정한 업무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2. 응시자격 (당초 공고 마감일 (2026.2.2.) 을 기준으로 함)

가. **공통자격**

1) 18세 이상이면서 정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

※ "환경미화원" 직종은 (준)고령자(50세 이상) 우선고용에 해당

* 정년 : 60세. 단, 환경미화원 직종의 경우 준고령자 우선고용 시에는 65세

2)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된 자 포함)

4) 응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자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및 범죄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 등을 한 자
-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는 자
- 기타 채용권자가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개별법령에 따라 채용이 제한되는 자

나. 개별자격 (가. 공통자격도 충족 필요)

환경미화원	< (준)고령자(50세 이상) 우선고용에 해당 > ▪ **환경미화원A** : **보통 1종 면허 소지 및 수동트럭 운행가능자** * 면허정지 또는 취소인자(예정자 포함)는 응시 불가 ▪ **환경미화원B** : 없음 (공통자격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야간전담사감~~	▪ **~~남성~~**(성별제한) * 남고에 해당

3. 우대요건 및 가점 (당초 공고 마감일 (2026.2.2.) 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및 가점 미해당자도 지원 가능(필수자격은 아님)하며, 서류전형시에만 반영

가. 우대요건

환경미화원	▪ 국가·지자체·교육청·초중고교·공공기관·법인에서 청소·환경미화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최대5년)
~~야간전담사감~~	▪ **~~(경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교에서 사감업무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자(기간별 차등우대, 최대5년)~~ ~~* 강사 직종 등 제외, 초중고교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만 해당~~ ▪ **~~(자격)~~**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국가자격)보유자, 중등학교 정교사(1·2급) 및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자격 보유자~~

나. 가점

- 서류전형 시 **사회형평 대상자*** 가점 부여(만점의 3%)

*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단, 장애인의 경우 보조인의 도움 없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필독)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

자격

■ **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환경미화원A 직종의 경우 1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톤 트럭 '수동' 운전이 가능한 자만 지원할 수 있음.

경력

■ 경력은 **응시원서에 기재되고, 근무기관·근무기간·담당업무·휴직기간(해당시)** 등이 표기된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어야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및 미비(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별지7호 활용 가능)

* **재직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26.2.2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봄.

- 동일기간에 인정되는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근무경력이 긴 경력 등)만 인정
- 경력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기간(경력미인정)을 반드시 기재 必, 의무복무경력 또한 불인정

■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직종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카드 등)를 첨부하여야 함(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또는 미비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참고1)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4. 채용 절차 및 평가 방법

※ 전형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공고	⇒	원서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기존 (야간전담 사감)	1.23(금)~ 2.2(월)		1.23(금)~ 2.2(월) **17시**		~2.6(금)		2.10(화)~ 2.11(수)		~2.20(금)
정정 (환경 미화원)	2.5(목)~ 2.10(화)		2.5(목)~ 2.10(화) **17시**		~2.13(금)		2.19(목)		~2.24(화)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모집구분별 3배수 이하일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본교 누리집에 공고함.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되, 5배수 초과 접수 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심사 대상자(서류합격자)로 선정

나. 면접전형 * 응시표 교부 예정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실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등을 검증

 * 평정요소 : (환경미화원) 소통공감, 헌신열정, 윤리책임, 발전가능성
 (야간전담사감) 소통공감, 헌신열정, 윤리책임, 발전가능성, 전문성응용력

- **(합격자결정)**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안내

가. 추가 **접수기간** : '26.2.5(목)~2.10(화) 17:00 까지 (환경미화원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확인 문자 발송 예정)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함)**까지 유효**

※ 기존 공고 응시자는 재접수 불필요(기존 접수분 유효). 단, 변경일정으로 접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응시 포기서 제출 요망. '야간전담사감' 응시자 중복응시 불가

다. **제 출 처**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69 부산기계공고 본관 행정실

라. **제출서류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내용
필수	1.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명란이 있는 서류는 자필서명 必**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2호)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3호)	
	4.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4호)	
	5. 응시자격 검증 체크리스트 1부 (별지5호)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체크리스트 1부(별지6호)	
	7. 주민등록초본 1부 (등본 X)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8. 운전면허증(환경미화원 A 직종에 한함)	- 보통1종 이상의 면허 제출 必
해당자만 제출	1. 자격증사본	- 2p 참고 * 직종별 우대하는 사항에 대해 제출
	2. 경력증명서 * 직종, 근무기간, 근무처, 담당업무 등이 **표기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2p 참고)	
	3. 사회형평대상자 증빙서류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2년이상),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 **공고일 이후 발급 증명서류에 한함.**

*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평가하며, 우대사항 등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 전력조회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마약류검사결과서, 잠복결핵검진확인서,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제출은 금하며, 필요한 경우 진위여부 확인 및 추가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조건

가. **계약기간** : 2026.03.01.부터 정년* 시 까지

* 정년 : 60세. 단, 환경미화원 직종의 경우 (준)고령자로 우선고용 된 경우 65세

※ 채용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평가를 통해 계속근로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업무내용** : 1p 직종별 업무내용 참고

※ 직종별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채용 이후 업무분장 등으로 정함.

다. **근무형태** : 주40시간 상시근무

* 1p 참고. **단, 학교 여건에 따라 근무일·근무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라. **보수액**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취업규칙에 따름

* 예시('25년 기준) : (기본급) 2,266천원, (급식비) 150천원 등

마. **근무장소**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7. 유의사항(필독)

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합격을 무효로 함

나. 경력·자격에 대한 우대요건 및 가점은 서류전형 시에만 반영함

다. 자격요건, 경력 등의 사항은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라.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마.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합격자 제외)

사.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시험에 응시한 자,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취업규칙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경력 조회, 마약류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는자 등의 경우 합격 또는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아.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자. 최종 합격자의 채용등록 포기, 응시결격사유에 의한 합격 취소가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차. 본 공고는 환경미화원 안내문구 표기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공고로, 변경된 내용은 '환경미화원' 직종에 한하며, 야간전담사감 응시자의 경우 종전 공고 일정에 따름. 또한 야간전담사감 응시자는 환경미화원 직종에 응시할 수 없음(중복지원 불가)

카. 이번 정정공고에 따른 추가 접수와 관계없이 모든 응시자격(연령, 국적 등),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기간 산정 등의 기준일은 당초 공고 마감일인 '2026.2.2.(월)로 동일하게 적용함.

붙임 **응시 제한사유**

가. 당초 공고 마감일(2026.2.2.)을 기준으로 정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

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이 제한되는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및 범죄사실이 있는 자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2.「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일부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8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허가・등록・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항 생략)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18.「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 등을 한 자

바.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는 자

사. 기타 채용권자가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채용이 제한되는 자

참고 이전 경력기관 폐업 시 조치방법

가. 경력기관 폐업 시 필수 제출 서류 → 하기 서류 모두 제출 必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하단 참고)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나.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방법(홈택스)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